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4935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와 VAN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을 요구받았다. 이에 원고는 D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원하는 피고를 소개받았다.

나. 원고는 2020. 7. 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E건물 8층 F호, 10층 G호, 13층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I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담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딸인 J의 계좌로 합계 6,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입금액(원)	비고
1	2020. 7. 8.	12,000,000	
2	2020. 7. 8.	28,000,000	
3	2020. 7. 20.	20,000,000	
4	2020. 8. 4.	3,000,000	
		63,000,000	

라. 피고는 그 소유인 의정부시 E건물 10층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20. 8. 4. K에게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2020. 7.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21. 10. 18. 임차보증금을 2억 3,200만 원으로, 확정일자를 2019. 8. 12.로, 임차권자를 L으로 기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1카임36호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등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6,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D의 요청에 따라 2020. 9. 18.에 2,000만 원을 입금시켜 주어 원고가 지급한 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2020. 8. 4.까지 6,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돈의 반환을 구하므로 이로써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담보제공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자신의 의무이행사실, 즉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K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피고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보았으나,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K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한다.

다) 오히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물상보증인인 피고의 구상채무를 변제할 위험이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임차권자를 L으로, 임차보증금을 2억 3,200만 원으로, 그 확정일자를 2019. 8. 12.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으므로 L의 위 임차보증금 채권이 K의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2억 5,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이상 위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잔액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원고는 K에 대한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할 위험만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의 요청에 따라 2020. 9. 18.에 2,000만 원을 입금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20. 9. 18. M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거나, 그 돈을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재원